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95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신청사 건립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금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조례 제2조의2)
 - ‘2025년 12월 31일’ 에서 ‘2027년 12월 31일’ 로 연장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별첨 7]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첨 2])
- 다. 협의: 감사관, 예산담당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협의 완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2) 입법예고(2024. 8. 8. ~ 2024. 8. 29.) 결과: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3]
 - 3)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 4) 부패영향평가: [별첨 4]
- 5) 성별영향평가: [별첨 5]
- 6)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 6]

【별첨 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7년 12월 31일 -----.

【별첨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기금 존속기한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 청사이전추진단(청사이전기획팀) 행정6급 김종훈(T: 2282-8502)

【별첨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 견 없 음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장학사	황은영
입안주관부서	청사이전추진단	통보일	2024. 7. 22.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안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안)은 신청사 건립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마련되었으므로 부패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4A서울교육016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청사이전추진단		
	담당자명	김종훈	전화번호	02-2282-8502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4년 7월 18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4년 7월 18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7월 18일</p>				

【별첨 6】

자치법규 · 학생인권영향평가 요청에 따른 회신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 청사이전추진단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요청에 따른 회신(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
금 설치 운용 조례)

1. 관련 :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당관-3689(2024.7.4.)호.[서울시의회 정례회 의결 조례 공포 통지]

나. 청사이전추진단-3093(2024.7.18.)호.[학생인권영향평가 요청]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공포(2024.7.4, 서울시의회)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2024.7.4. 폐지)』 제43조2항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법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끝.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

★주무관

이승엽

학생인권교육센
터담당사무관

곽상원

학생인권옹호관

우필호

민주시민생활교
육과장

전결 2024. 7.
22.

강삼구

협조자

시행 민주시민생활교육과-15849 (2024. 7. 22.) 접수 교육행정국 청사이전추진 (2024. 7. 22.)
단-3123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신문로2 / http://www.sen.go.kr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전화 02-399-9086

/전송

/winside@sen.go.kr

/비공개(5)

【별첨 7】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4. 3.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107호, 2024. 3.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0.>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4.3.20.>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개정 2016.12.29.>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1.12.>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2.>

2. 공무원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청사이전추진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 2023.10.5.>

3. 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2.>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설 2023.1.12.>

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신설 2023.1.12.>

다.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신설 2023.1.12.>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12.>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교육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 <개정 2023.10.5.>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6255호,2016.7.7.>폐지 부칙 <제6255호,2016.7.7.> 부칙<제6255호,2016.7.7.>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6362호,2016.12.29.>폐지 부칙 <제6362호,2016.12.29.> 부칙<제6362호,2016.12.29.>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부칙<제7768호, 2020.12.31.> 부 칙 <제776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52호, 2022.10.13.> 부 칙 <제8452호,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93호,2023.1.12.>펼침 부 칙 <제8593호,2023.1.12.> 부칙<제8593호,2023.1.12.>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8873호,2023.10.5.>(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부
칙 <제8873호,2023.10.5.>(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07호,2024.3.20.> 부 칙 <제9107호,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